

◆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 - 「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
 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- 본 개정 조례안은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 제정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신설 등 관련규정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주요골자

-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신설과 그에 따른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 부터 제4조)

- 기증품의 취득과 물품의 망실 훼손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등 책임 있는 물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확히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23조)

-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는 등 부적합한 용어에 대해서 부분 수정함 (안 제26조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기타 관련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

【 검토결과 】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 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,
-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분리·제정(법률 제7665호, 2005. 8. 4. 공포, 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사용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안 제2조부터 제4조의 개정내용은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93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, 물품운용관 등의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으므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를 지정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- 물품관리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 등의 물품관리에 관한 직무를 지정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휘·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
- 안제21조에서는 재고품, 공용품, 전용품 등에 대한 보관책임과 지도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- 안 제23조에서는 물품의 망실·훼손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물품의 망실·훼손 사고발생 시에 보고자를 물품운용관, 분임물품출납원, 전용자에서 전용자를 제외하고 물품관리관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 다만 전용자가 망실·훼손을 은폐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동법 시행령」, 행정자치부 개정조례의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